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  
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 원무(보험)부서장

제 목 의료급여 경증질환자 원외처방 약제비 본인부담 변경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공고 2015-456(2015.8.4)

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-8740(2015.10.15)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 52개 경증질환으로 내원하는 경우, 환자의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을 기존 정액제(500원)에서 정률제(3%)로 변경하는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,

3.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**2015.11.1일부터 시행** 예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

· 지역별 보장기관(지자체)에서 10월 넷째주부터 해당 의료급여기관(종합병원 이상)을 방문하여 홍보포스터 배부·부착 예정

붙임 :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QA 1부.

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안내 포스터 1부.

※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([www.kha.or.kr](http://www.kha.or.kr)) /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)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수신처

전국병원장

사원 김영진 팀장 노환우 국장 류향수

시행 : 보험 제 2015-505 ( 2015.10.16 )

우 121-737 서울 마포구 마포동 현대빌딩13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[www.kha.or.kr](http://www.kha.or.kr)

전화 02-705-9258 전송 02-705-9259 ( 대표FAX : 02-705-9209 ) E-mail : [yjkim@kha.or.kr](mailto:yjkim@kha.or.kr)